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9.24.)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의원)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 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 3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현행법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개정안은 ‘적(敵)의 침투 도발 또는 전단·물품 투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¹⁾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높고 긴급한 대처가 요구되어 국가 차원의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등을 민방위사태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 사태’를 민방위사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민방위기본법」의 취지 및 현행법에서 정하는 민방위사태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²⁾.

둘째, 개정안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행정입법 마련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하되, 피해가 발생하였고 북한의 도발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

1) 「민방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5.28.~8.11., 11회)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가~다목에 준하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